

대구광역시 달성군 소상공인 심리상담서비스 지원 조례안

(김보경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763
----------	------

발의연월일 : 2025. 11. 27.

발의의원 : 김보경 의원,

신동윤 의원, 박영동 의원

1. 제안이유

소상공인이 겪는 우울·불안 등 심리적 어려움이 경영 안정과 지역 상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며, 전문상담 연계를 통해 소상공인의 정신건강 회복과 지속 가능한 영업환경 조성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2조)

나. 심리상담서비스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다. 심리상담서비스 지원 등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6조)

3. 제정 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나.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붙임)

대구광역시 달성군 소상공인 심리상담서비스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성군에 소재하는 소상공인이 겪는 심리·정서적 어려움 해소와 경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심리상담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를 따른다.
2. “심리상담서비스”란 전문상담기관, 상담인력 등을 통해 심리적 어려움 해소 및 정서지지, 스트레스 관리, 위기 대응 상담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사업장 주소가 대구광역시 달성군에 있고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행위를 하는 소상공인에게 적용한다.

제4조(심리상담서비스 지원계획 수립)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소상공인의 정신건강 회복과 심리적 안정, 지속 가능한 경영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심리상담서비스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5조(심리상담서비스 지원)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심리상담센터 또는 전문기관 연계 상담서비스 제공
2. 응급 정서상담(위기상담) 지원 및 필요 시 외부 연계

3. 집단 워크숍, 마음 건강 교육, 심리진단 서비스 제공
4. 온라인, 전화, 방문상담 등 다양한 방식의 상담 지원
5. 소상공인 스트레스 예방 및 심리 회복 프로그램 운영
6. 그 밖에 군수가 소상공인의 정신건강 증진과 심리적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사업을 하는 심리상담서비스 관련 전문성을 가진 기관이나 법인·단체 등에 그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보조금 지원 방법·절차 및 관리 등과 관련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을 따르거나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소상공인 심리상담서비스 지원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이나 법인·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제7조(비밀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소상공인 심리상담서비스 지원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하였던 사람은 그 업무 중 알게 된 비밀 또는 개인정보를 누설해서는 안되며, 그를 처리 및 관리 등을 할 때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사무의 위탁)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심리상담서비스 관련 전문성을 가진 기관이나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할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

례」를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소상공인기본법(법률)」(2025.10.1. 타법개정, 2025.10.1. 시행)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2.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소상공인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소상공인으로 본다. 다만, 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정부는 소상공인의 보호와 자주적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소상공인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시책에 따라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지역의 소상공인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상공인 보호·육성에 필요한 재원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④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호 간의 협력과 소상공인시책의 연계를 통하여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4조(사회안전망 확충 및 삶의 질 증진) ① 정부는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확충에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상공인의 생산성 제고 및 삶의 질 증진을 위하여 소상공인의 복지 수준 향상에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소상공인 심리상담서비스 지원 조례」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소상공인 심리상담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문상담기관 연계, 심리상담 프로그램 운영, 집단 워크숍 및 마음건강 교육 추진 등에 필요한 예산이 소요될 수 있음(안 제5조)
- 상담서비스 운영·관리를 위한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및 외부전문기관 위탁 시 사업 수행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안 제6조 및 제8조)

2. 미첨부 근거 규정

-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제2호)

3. 미첨부 사유

- 본 조례안은 소상공인 심리상담서비스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사업 규모·방식·지원범위 기준이 필요함
- 심리상담서비스는 이용 수요, 전문기관 참여 여부, 서비스 형태(대면·비대면 등)에 따라 사업비 변동 폭이 커 현 단계에서 정확한 비용을 추계하기 어려움
- 또한 상담건수, 참여 소상공인 규모, 프로그램 구성 등에 따라 예산 규모가 달라져 구체적인 비용을 기술적으로 추계하기 어려움

작성 자

소 속 및 직 위

달 성 군 의 회 의 원

성 명 (연 락 처)

김 보 경 (☎ 2052)